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드림스타트
- 방문건강관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자활사례관리
- 중독사례관리
- 정신건강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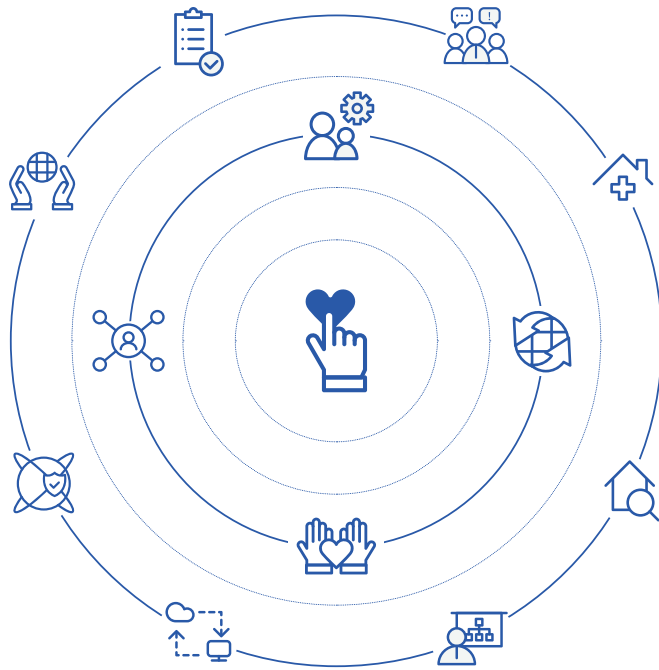
CONTENTS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 협력 업무 안내

I. 사업개요	05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06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08
3. 방문건강관리	10
4. 의료급여사례관리	12
5. 자활사례관리	14
6.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15
7. 정신건강사례관리	17
8.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19
I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 협력 방안	21
1. 읍 · 면 · 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22
2. 아동통합보호	25
3. 보건복지 연계	27
4. 방문형 서비스 연계	29
5. 자활-정신건강 연계	31
III.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지침 개정	33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4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35
3. 방문건강관리	39
4. 의료급여사례관리	41
5. 자활사례관리	43
6.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45
7.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47
8. 희망복지지원단	51
9. 개인정보 보호	55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I. 사업개요



I. 사업개요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개념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업목표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등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

- 제외대상: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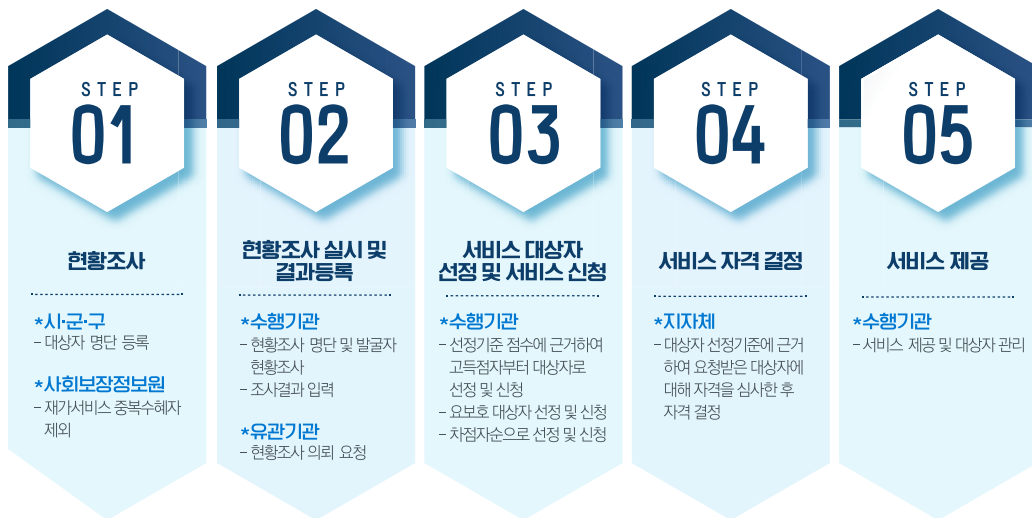
사업내용

- 현황조사: 실제 독거유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 제공서비스

- ① 안전확인: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 안전확인, 환경변화 및 욕구 파악, ICT기술 및 민간자원 활용 등의 안전확인 실시
- ② 생활 교육: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③ 서비스 연계: 종합사정 계획 및 대상자의 수시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④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수행기관의 수행인력이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의례 제공

사업수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의뢰절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으로 기초 정보 등 정보제공을 통한 대상자 의뢰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개념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사업목표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주요 내용

사업내용

- 아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한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예시)

서비스 분야	프로그램(예시)
신체/건강 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서비스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서비스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 관련 교육,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서비스 분야	프로그램(예시)
가족 및 통합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

-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로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 시·군·구 내 드림스타트 전담부서에서 사업 수행(보건·복지·교육(보육) 분야별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행인력 배치)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드림스타트로 의뢰

- 의뢰절차: 해당 아동 거주지역(시·군·구)의 드림스타트에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 의뢰

3. 방문건강관리

개념

관련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사업목표

-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사업대상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 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주요 내용

사업내용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소그룹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실시
 - ① 계절 및 자연재난 관련 사전 안전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②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거나 어린이 및 노인의 학대·방임, 가정 폭력으로 인한 취약대상(개인, 가정 등) 발굴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
 - ③ 금연, 절주, 규칙적 신체활동,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질환 발생 사전 예방
 - ④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 ⑤ 임신부와 신생아의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⑥ 건강위험군인 영유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⑦ 노인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기능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상태를 사전 예방
 - ⑧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가진 다문화 가족 관리

- ⑨ 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관리
- ⑩ 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 생활 자립능력 증진

사업수행

- ① 대상자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검진자 및 생애전환검진자 중 검진 사후관리 동의자 검진 결과 정보 연계, 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 등에 의뢰된 자
- ② 대상자 등록: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관리에 동의한 경우 전문인력은 기초조사표와 건강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군 분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2개군(집중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또는 3개군(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운영 가능
- ③ 군별 관리내용: 분리된 군은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④ 대상자 평가: 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후 재평가 등을 통해 추후 관리 시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 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중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의뢰절차: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에게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보건서비스 의뢰
 - ※시스템 연계기관 간 의뢰 가능

4. 의료급여사례관리

개념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사업목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규 취득한 전체 대상자 및 질병 대비 과다 의료이용자

주요 내용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의료급여 제도 및 적정 의료이용 안내를 통해 잠재적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
-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 유도
- 장기입원 후 퇴원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재가급여 제공 ('19. 6. ~, 4개 시·군·구 시범사업*)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지역에서 실시('19. 1. 지자체 공모, '19. 3. 지역 선정, '19. 6. 사업 실시)

사업수행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시·도 의료급여 담당부서,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 사례관리 업무 흐름도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쇼핑, 중복처방, 입·퇴원 반복, 사회적 입원 등 질병 대비 부적정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
- 의뢰절차: 의뢰 전에 업무 담당자와 상의한 후 공문으로 요청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지원내용 등 안내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에게 연락

5. 자활사례관리

개념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및 동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사업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목표

- 참여자의 자활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와 환경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
 - ①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자활자립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② 참여자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획득 역량 강화
 - ③ 참여자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안정 및 강화로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 회복

사업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민 중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희망 참여), 일반수급자(희망 참여), 급여특례가구원(희망 참여), 차상위자(희망 참여), 시설수급자(희망 참여)

주요 내용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근로 기회 제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자활이 필요한 주민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실행: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립경로(IAP) 및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전인격적·다차원적 자립 여건 조성
- 지역사회 지원 연계: 문제해결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의뢰기준 및 절차

구분	기준	의뢰방법
일반 사례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	지자체를 통한 의뢰

6.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개념

관련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목표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사업대상

-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주요 내용

사업내용

구분	내용
중독 조기 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	조기선별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체계 구축, 심층 사정평가, 교육 및 집단개입프로그램 수행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방문보건팀, 주민센터, 복지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의 신규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중독 피해 예방 및 교육	선택적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 및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중독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 법무체계 등 지역인프라 구축,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의뢰
지역진단 및 기획	지역정신보건계획 수립,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서비스 기획, 자원조정 및 중재,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도 조사와 우선순위 선정

의뢰기준 및 절차

구분	기준	의뢰방법
응급사례	알코올 섭취상태에서 자·타해가 이루어지거나 신체적 응급 상태인 경우	경찰 및 119 구급대 호출 후 필요시 응급입원 조치
의뢰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자살 및 자·타해의 위험성이 의심된다 -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정평가 및 치료기관 의뢰가 필요하다 - 알코올 중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알코올 중독의 잦은 재발로 입·퇴원을 반복한다 -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이력 및 자·타해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 AUDIT-K 를 이용한 사전 스크리닝 필요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동의(필수) - 필요시 방문 동행(주취 상태가 아닐 것, 읍·면·동 보조인력 동행) - 중독이력에 대한 정보제공

7. 정신건강사례관리

개념

관련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규정에 근거

사업목표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사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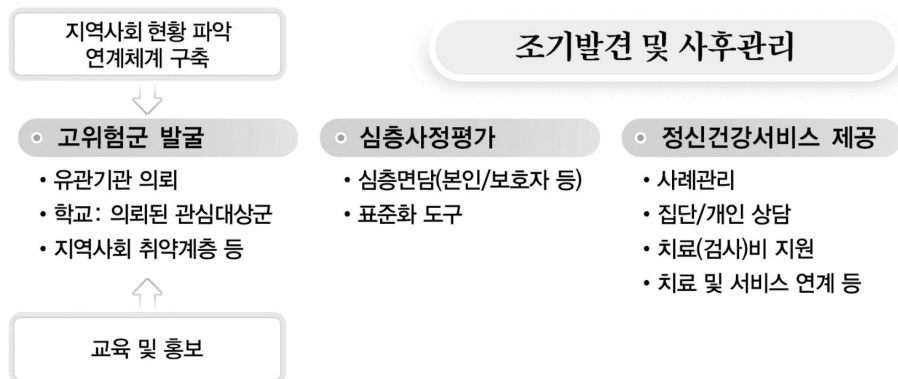
-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함

주요 내용

사업내용

- 자살예방사업: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위기개입, 생명존중문화 조성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위기개입, 조기발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 중독관리사업: 중독자 회복 촉진 및 사례관리, 위기개입
 -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사업수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자살 및 자·타해의 위험성이 의심된다
- 정신질환이 의심되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 약물 및 증상관리가 안되어 잦은 재발을 하고 있다
- 정신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 적응이 필요하다

• 의뢰절차: 응급·위기·집중사례별 절차

구분	기준	의뢰방법
응급사례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	경찰 및 119 구급대 호출 후 필요시 응급입원 조치
위기사례	자살시도 경험이 있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 자·타해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 필요시 방문 동행(의뢰기관 사례관리자와 동행)
집중사례	반복적인 자살사고를 표현하는 등 자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 자살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동의 - 필요시 방문 동행(의뢰기관 사례관리자와 동행)

8.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개념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사업목표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도 능동적 대응

중점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 탈락자 등 탈빈곤·자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가 있는 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과 빈곤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주요 내용

사업내용

- 대상자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서 초기상담 실시
- 통합사례관리 실시: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관 민원 처리
- 자원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사업수행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복지담당공무원: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 담당으로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수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2항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근거 신설('17.9.22. 시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안전(학대, 폭력, 방임)과 정신건강의 문제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가 있다
-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 탈락 가구 등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다양한 욕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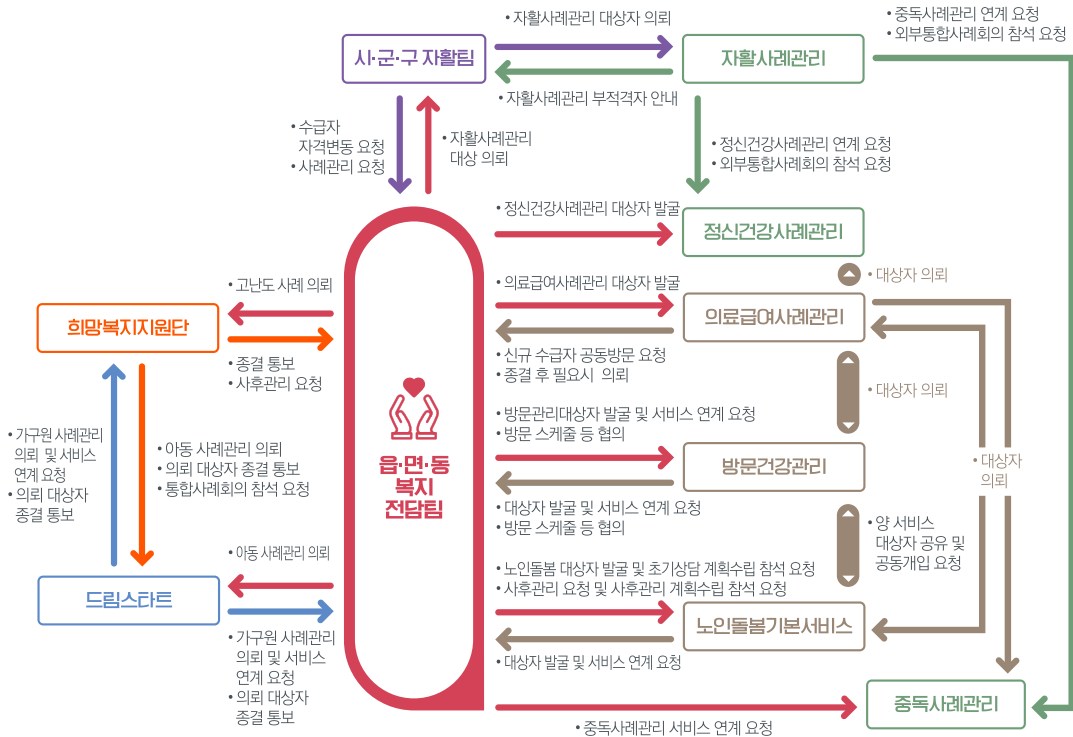
- 의뢰절차: 대상자 소재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사전 협의 후 공문 의뢰

I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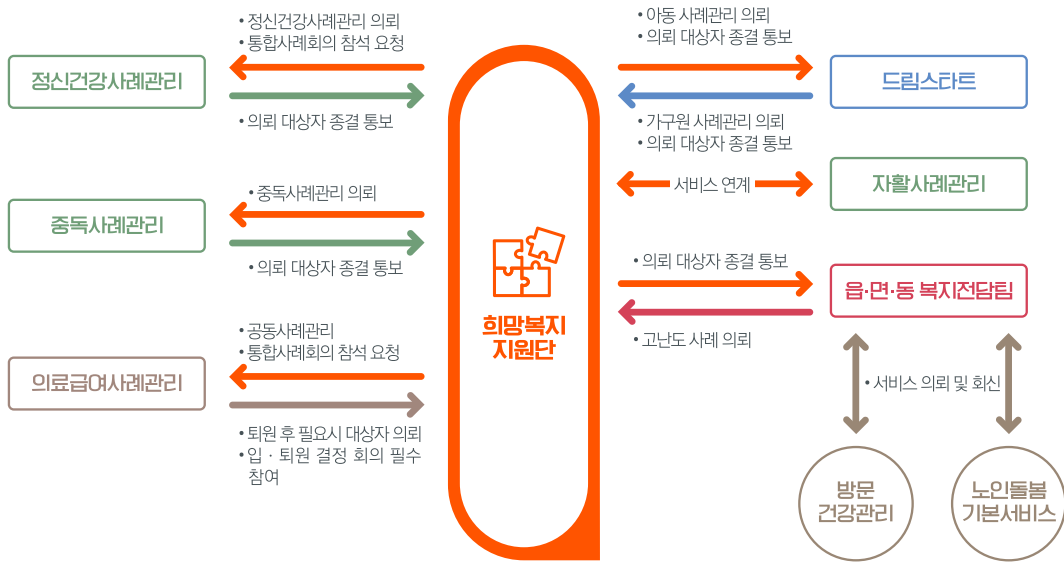
1.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읍·면·동에서는 다양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에 대하여 접수·초기상담 등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며,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연계를 위해 사례회의 정례화 및 구조화 등 수행

I. 읍·면·동 게이트웨이 기능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기능



조직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종합 사정을 강화하여 발굴된 대상자를 해당 사례관리 사업으로 의뢰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
 - 방문형 서비스 인력과 의 연계를 통한 사례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 타 사례관리 사업 간 사례회의 등 네트워크를 구조화

업무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발굴된 대상자*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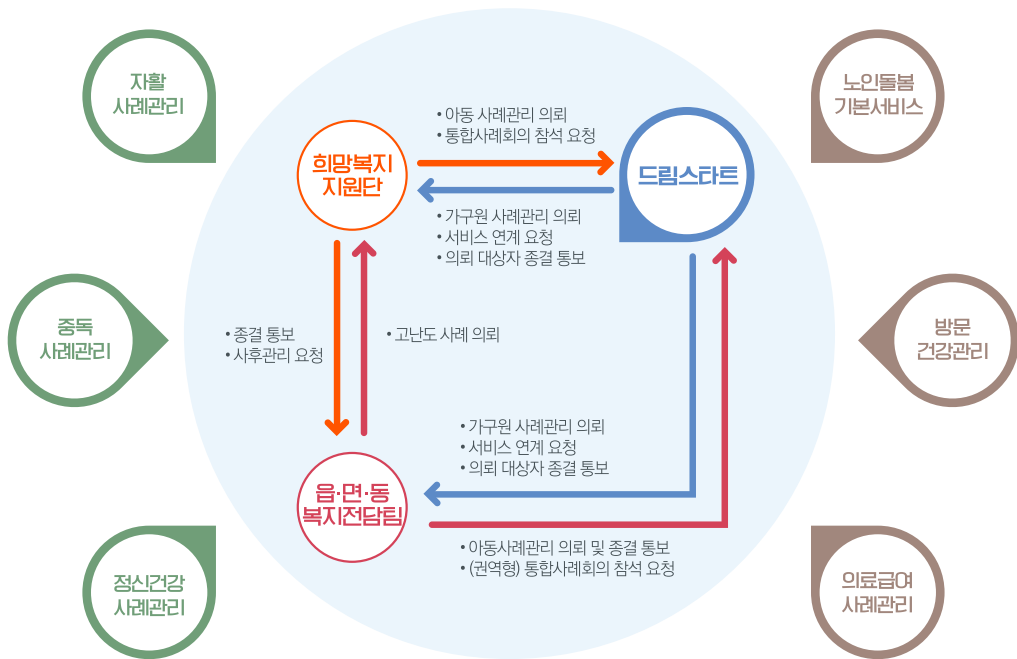
*발굴된 대상자

-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 다양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발굴된 대상자
 - 자활사례관리의 부적합자여서 읍·면·동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변동이 요청되어 의뢰된 자
 - 방문형 서비스 인력이나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 등

- 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대상자에게 초기상담 진행
 - 초기상담 후, 대상자 의뢰(고난도 사례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그 외 다른 공공부문 사례관리로 해당 대상자를 의뢰)
 - 초기상담 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대상자에게 욕구사정 및 위기도 조사를 진행
 - 욕구사정 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의 필요성을 타진(통합사례관리의 욕구사정 및 위기도 조사 외 드림스타트, 방문건강, 정신보건 등의 영역을 종합적 사정)
 - 사정 후 필요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 대상가구를 의뢰
 - 필요시 사후관리 및 타 사업 사후관리 점검(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 희망복지지원단
- 고난도 사례의 통합적 욕구 조사를 통해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에 적합하다면 의뢰
 - 통합사례회의의 수행: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조정 역할
 - 타 사례관리 사업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시 참석 협조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 의뢰, 타 사업 의뢰 대상자 접수 및 서비스 연계, 대상자 사례관리 종결 시 의뢰기관에 통보
 - 통합사례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참여
 - 사례회의 개최 시 참여 협조
 - 사례관리 종결: 의뢰 기관에 종결 통보(의뢰 기관은 종결의 적절성 확인)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 방문형 서비스 인력 간 연계·협력하여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공유 등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수행

2. 아동통합보호(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읍·면·동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로 대상자를 의뢰하고, 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연계 등 요청



조직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간 기능 연계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게이트키퍼 역할수행: 종합사정을 통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및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 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를 의뢰
- 서비스 연계 필요시 통합사례회의 개최 및 사업 간 네트워크를 구조화

업무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종합적 욕구 사정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할 가구와 드림스타트로 의뢰할 가구로 분류하여 의뢰
 - 아동 사례관리 의뢰 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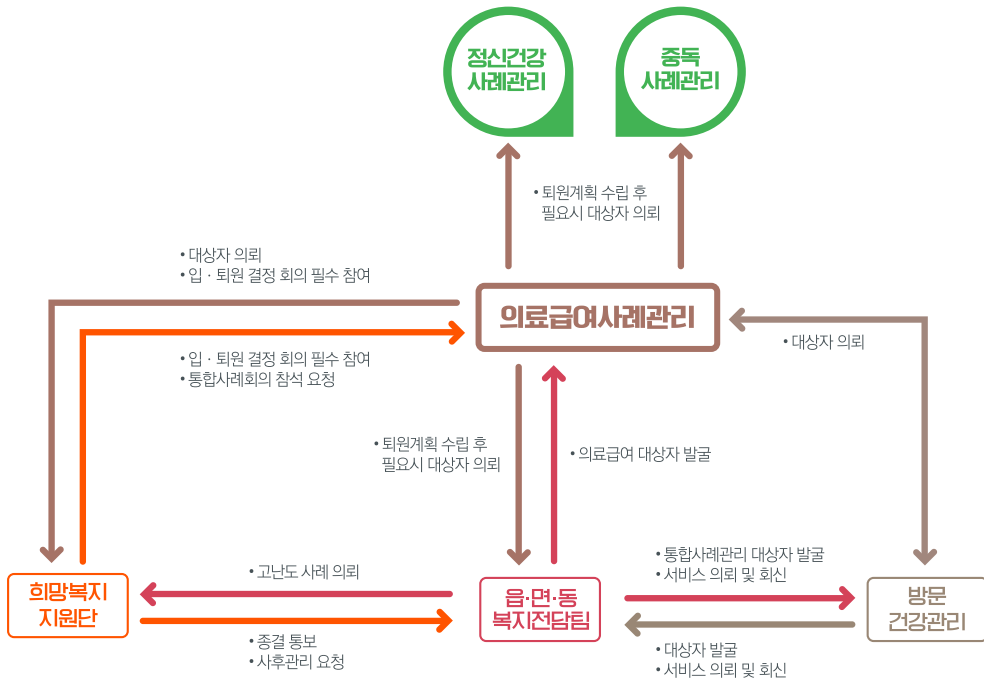
- 드림스타트
 - 가구원 사례관리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아동 사례관리 제한 연령 도래로 인한 종결 시 지속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 희망복지지원단
 -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여부 결정)
 - 종결 후 의뢰 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관련 필요시 협조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워킹 그룹

- 공통
 -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당 가구의 주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진행) 하고 해당 사례관리 담당기관 참석 및 협조 요청

3. 보건복지 연계(의료급여-방문건강-정신건강-복지)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방문건강관리팀,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퇴원환자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를 요청하고, 복지 영역과 연결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와 연계를 구조화



조직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의료급여-방문건강-정신건강-복지 연계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보건 및 복지 대상자를 발굴

- 의료급여사례관리

- 퇴원 후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방문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
- 대상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종결 시 복지 영역과의 연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연계 과정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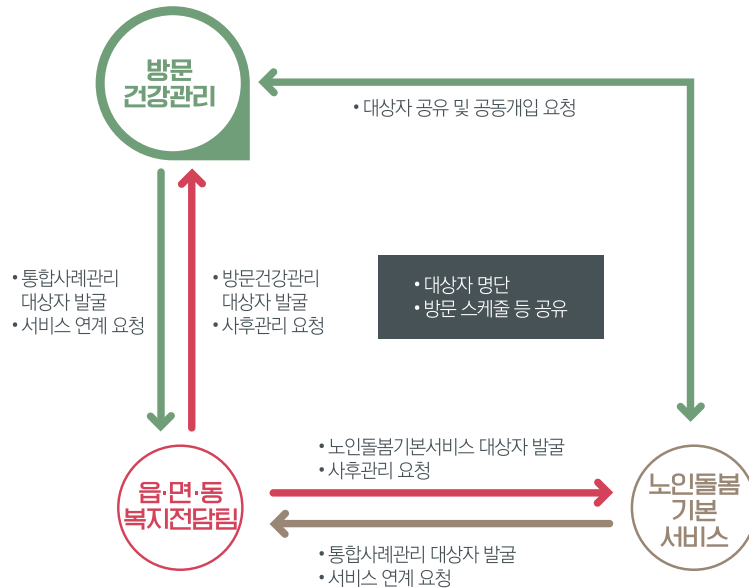
- 각 사업별로 해당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연계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업 간 네트워크를 구조화

업무내용

- 업무 연계: 대상자 발굴, 통합사례회의, 종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종결 및 사후관리 과정을 통하여 보건-복지 연계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대상자 의뢰: 종합적 욕구 사정 후 희망복지지원단,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수행기관,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대상자 의뢰
 - 의뢰된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제공: 의료급여사례관리 (퇴원)대상자 및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초기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의 고위험 가구 종결 후 사후관리 수행
- 희망복지지원단
 - 대상자의 입·퇴원 결정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사업 간 조정 역할(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참석 요청)
 - 읍·면·동에서 의뢰된 고위험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수행
- 의료급여사례관리
 - 퇴원 대상자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방문건강관리 수행기관으로 대상자 의뢰
 - 대상자의 입·퇴원 결정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시 필수 참여
- 방문건강관리
 - 필요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공동 사후관리
-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 의료급여사례관리 (퇴원)대상자 의뢰 시 서비스 제공

4. 방문형 서비스 연계(읍·면·동-방문건강-노인돌봄기본)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방문건강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간 방문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을 조정하면서 방문형 서비스 간 연계 · 협력



조직

읍·면·동 단위에서 방문형 서비스를 연계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과 협의하여 초기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 대상자 명단을 공유하고, 방문 스케줄을 조정하며 방문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업무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대상자 의뢰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의뢰된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수행
 - 초기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 진행(방문형 서비스 담당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 등 업무 수행 필요시 협조
 - 발굴된 고위험군 독거노인 사례관리 개입 계획 수립 시 협조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대상자 관리: 건강취약 관리자 명단(건강보험공단 제공)
- 대상자 의뢰: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 등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의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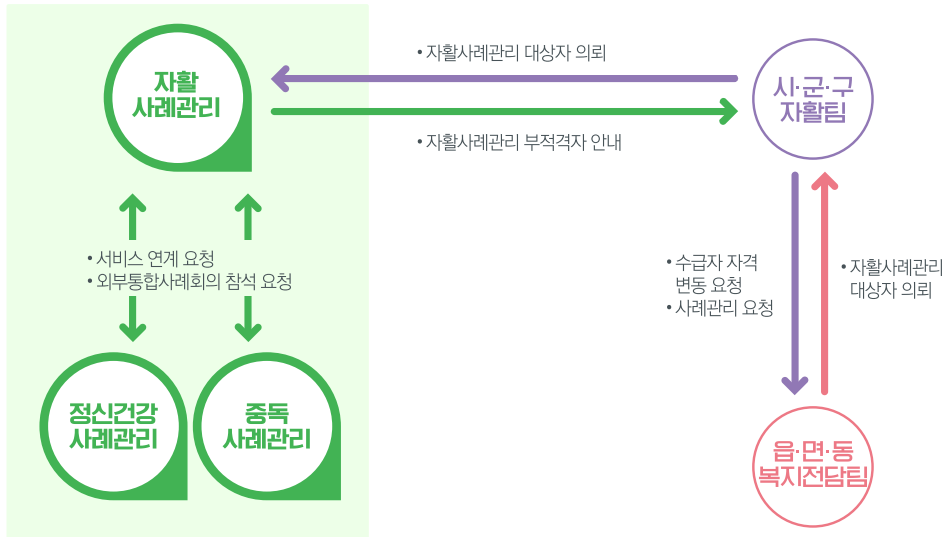
- 대상자 관리: 서비스 대상 관리자(시·군·구 제공)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의뢰 대상자
- 대상자 의뢰: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 등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의뢰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초기 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협조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 방문형 서비스 인력 간 연계·협력하여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공유 등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 수행

5. 자활-정신건강 연계(자활사례관리-중독-정신건강)

자활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요청하고, 자활사례관리 부적격 대상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실시



조직

자활사례관리와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간 기능 연계

- 자활사례관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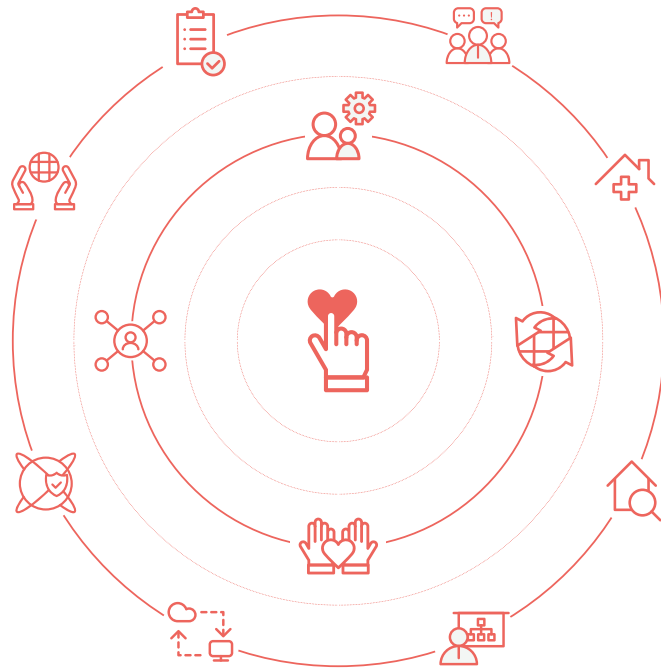
- 시·군·구의 자활팀을 통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자활사례관리 대상자 부적격자를 의뢰하여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
-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자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사업으로 의뢰

업무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사례관리 대상자(조건부 수급자)를 시·군·구 자활팀으로 의뢰하면 시·군·구 자활팀에서는 지역자활센터로 의뢰
- 자활사례관리 의뢰 후 자활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자활팀에 안내
- 시·군·구 자활팀: 읍·면·동으로 자활사례관리 부적격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변동 요청 및 통합사례관리 의뢰
- 자활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신적 문제로 자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사례회의 참석 협조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Ⅲ.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지침 개정



Ⅲ.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지침 개정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방문형 서비스 연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p> <p>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 절차</p> <p>「현황조사」 계획</p> <p>- 현황조사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대상: 기본대상 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한 요보호독거노인 	<p>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p> <p>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 절차</p> <p>「현황조사」 계획</p> <p>- 현황조사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대상: 기본대상 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발굴 및 의뢰된 독거노인 	
<p>「현황조사」 실시</p> <p>-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담당자는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하여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p>「현황조사」 실시</p> <p>-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담당자는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p>사업대상자 관리</p>	<p>사업대상자 관리[신설]</p> <p>-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종합사정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등의 서비스 의뢰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수행기관과 사례관리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서비스 의뢰·연계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 회의) 참석 요청 시 적극 협조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부터 방문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방문형 서비스 연계, 아동통합보호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사업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 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p>사업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등 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p>주요 업무</p> <p>4)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p>주요 업무</p> <p>4)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등) 사례관리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전담팀
<p>지원기구 운영 및 구성</p> <p>- 아동복지기관협의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의 장 등 (간사: 드림스타트 팀장) ※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의 각 실무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 구성·운영 가능 	<p>지원기구 운영 및 구성</p> <p>- 아동복지기관협의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의 장 등 (간사: 드림스타트 팀장) ※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의 각 실무자(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 구성·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전담팀 정신건강복지센터
<p>초기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내용 행복e음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비스 수혜이력,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 대상자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 	<p>초기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내용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수혜이력,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 대상자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 ※ 필요한 경우 과거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기관(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정보 직접 확인 필요 가구단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초기상담 단계에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사례 의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전담팀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사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팀장,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드림스타트 실무자 모두 참석 ※ 필요시 외부참석자(외부전문가, 수행기관 종사자) 참여 	<p>사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팀장,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드림스타트 실무자 모두 참석 ※ 필요시 외부전문가,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참여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정신건강복지센터
<p>대상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미선정 여부 최종 확정 * * 대상자 최종 선정 후 대상자 및 주양육자를 통해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동의서> 확보 • 희망복지지원단으로의 이관 여부 결정 	<p>대상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미선정 여부 최종 확정 * * 대상 최종 선정 후 대상자 및 주양육자를 통해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동의서> 확보 - 가구단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의 의뢰 여부 결정 ※ 공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p>종결심사 <참고> 종결 사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실시 여부 논의 - 사후관리 일정과 내용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p>종결심사 <참고> 종결 사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종결 여부 결정 시 해당 대상자의 연계기관 담당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참석 가능 - 사후관리 일정과 내용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타 지역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의뢰 필요 여부 확인 • 연령도래 종결의 경우 지속적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교육,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으로 연계 ※ 종결단계에서 대상자를 타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 의뢰 * 동 사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종결심사양식>에만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정신건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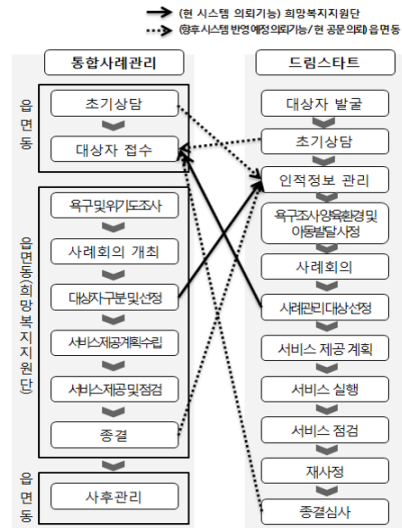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p>사후관리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경우 새로운 거주지역의 드림스타트와 연결되도록 사례관리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등록 - 종결대상자에게 종결심사 단계에서 e-그린우편을 연계하여 통지서 발행 가능(단, e-그린우편을 사용하는 지역만 발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사후관리 지원 	<p>사후관리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등록
<p>아동복지 서비스 통합 및 조정 나. 희망복지지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2) 희망복지지원단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는 의뢰받은 아동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및 사정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드림스타트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부터 의뢰 받은 아동에 대한 사정 결과 비사례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한 경우(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의뢰)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 가구 단위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의뢰 동시 진행 가능 	<p>아동복지 서비스 통합 및 조정 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2)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는 의뢰받은 아동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및 사정을 실시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드림스타트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사정 결과 비사례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의뢰한 경우(드림스타트→찾아가는 복지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의뢰)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 가구 단위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사례관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사례관리 의뢰 동시 진행 가능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사례관리 '대상자선정관리' 메뉴에서 '희망으로 이관' 선택 <p>※ 다만, 이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대상인 경우 의뢰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절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공문을 통해 의뢰 (사례관리 진행 중인 대상인 경우 의뢰 불가) <p>※ 다만, 행복e음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시스템 연계는 연내 기능 개선 완료 후 의뢰 가능</p>

■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 간 사례관리 협조 절차



■ 드림스타트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간 사례관리 협조 절차



아동복지 통합 및 조정

라.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내용 추가)

※ 사업 간 상호 대상자 의뢰 시,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 의뢰 절차 진행

1) 타 공공사례관리 사업(의료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정신건강, 자활, 방문건강, 중독관리 등)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별 의뢰기준 참고]

2) 타 공공사례관리 사업(의료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정신건강, 자활, 방문건강, 중독관리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는 의뢰받은 아동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및 사정을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3. 방문건강관리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방문형 서비스 연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3. 2019년 사업 추진 방향 [신규]</p>	<p>*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연계 및 협업 강화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행복e음 권한 부여 추진 • 요청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슬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및 종결회의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장 혹은 담당자 필수 참석 - 소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소생활권 단위의 보건의로 및 복지행정 인프라 연계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p>4.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연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 통합사례관리사업(희망복지지원단 등) 의뢰 및 연계 등 - 주기 : 필요시 - 연계서식(시스템이 없는 경우) 	<p>4.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연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 (보건소 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광역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전문기관, 무료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 복지서비스: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및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활사례관리사업 등) 의뢰 및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슬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및 종결회의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장 혹은 담당자 필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4.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사업간 연계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연계 - 대상자: 장기요양등급외 A, B, C등급 <p>※ 장기요양등급(1, 2, 3, 4, 5등급) 판정자는 퇴록</p>	<p>※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및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통합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취약계층아동사례관리, 의료급여사례 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p> <p>- 연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효율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타 사례 관리서비스 대상자 정보 공유 • 대상자 등록 및 군 분류: 대상자 방문 후, 건강 스크리닝 및 욕구사정 결과, 타 서비스 필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연계 • 군별 관리: 서비스 수행 중 확인된 타 서비스 필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연계 • 대상자 재평가: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 <p>※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팀은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공유 등의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p>[참고자료] II. 의료급여관리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단 안내</p>	<p>[목적]</p> <p>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각 사업 간 서비스 내용을 연계하여 보건복지 체감도를 높여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 마련</p>	

4.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보건복지 연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5. 자원연계 (1) 목적: 타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 및 사례관리 사각지대 해소	【변경 및 추가】 5.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가. 목적: 사례관리 대상자 중 요구되는 자원을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증진 향상 도모 및 사례관리 사각지대 해소 * 공공부문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활사례관리, 드림스타트 **각 사업별 상세내용은 2019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
2) 연계 서비스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 지역사회 내 자원 및 서비스 기관 연계	【변경 및 추가】 나. 연계 대상: 지속적인 관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각 사업별 기준을 확인 후 연계

2018년 기존 내용	2) 연계 서비스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 지역사회 내 자원 및 서비스 기관 연계	
2019년 개정 내용 (지속적 관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각 사업별 관리 기준 등을 확인 후 연계)	방문건강관리사업	질환의심군, 건강행태 위험군 등 건강취약 대상자* * 건강행태 위험군: 흡연, 위험한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자
	정신건강사업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하고 등록 관리에 동의한 대상자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조현병 (F00~F209), 양극성 정동장애 (F31~F319) * 중독관리사업: 알코올 (F10~F109) 및 기타 중독문제가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 ※ 연계 제외 대상: 알코올의 금단상태 (F103, F104), 알코올 전류 및 만기발병 정신병적 장애 (F10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다양한(복지, 주거, 교육, 법률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2019년 개정 내용 (지속적관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각 사업별 관리기준 등을 확인 후 연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복지서비스 또는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이 필요한 대상자 ※ 연계 제외 대상: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자활사례관리	직업상담 및 알선, 자활 및 일자리 사업 등 지원
	드림스타트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p>(3)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자원연계 의뢰양식에 의하여 방문 건강 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보건소를 통해 연계하고 화신 결과 확인 연계 주기: 매월 1회 양식: 대상자 명단 및 기초조사서 사본 ※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대상자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화신 주기: 매월(방문건강관리사업) / 분기 1회(정신건강증진사업) 	<p>【변경】</p> <p>다. 연계방법</p> <p>- 연계 대상,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하기 전 담당자와 상의 후 공문을 통해 연계요청 및 화신 결과 확인</p> <p>「방문건강관리사업」과 「정신건강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 주기: 매월 1회 화신 주기: 매월(방문건강관리사업) / 분기 1회(정신건강사업) 양식: 대상자 및 기초조사서 사본 ※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대상자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p>「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사전협의 후 협력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합동 방문 및 다각적 관리 실시 <p>【추가】</p> <p>라. 의뢰 받은 경우</p> <p>- 건강상태, 의료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례관리 여부 결정 및 결과 화신</p>
<p>(4) 「희망복지지원단」 과 연계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연계) 대상자 자원연계 의뢰양식에 의하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고 처리결과 확인 ※ 연계 전 연계 대상, 연계시기, 연계방법 등 구체적 내용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합동방문)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사전 협의 후 협력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합동 방문 및 다각적 관리 실시 (회의체 참석) 각 사업 사례회의 등 관련 회의 참석 	<p>【변경 및 추가】</p> <p>마. 사례관리 회의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사례관리 회의 (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특히 대상자의 입·퇴원 관련 내용일 경우 반드시 참석

5. 자활사례관리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자활-정신건강 연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내부사례회의 (목적) 사례관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간 사례회의를 통해 참여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례관리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센터장(총괄), 전담관리자, 실장 및 담당 실무자 등으로 구성 ※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서비스 연계 검토 - 월 2회 이상 내부사례회의의 진행 ※ 참여주민 사례관리 경과 및 특이사항 점검 ※ 개인별 ISP 현실성 검토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 연계 협의 등 	<p>내부사례회의 (목적) 사례관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간 사례회의를 통해 참여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례관리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센터장(총괄), 전담관리자, 실장 및 담당 실무자 등 구성 ※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 서비스 연계 검토 - 월 1회 이상 내부사례회의의 진행 ※ 참여주민 사례관리 경과 및 특이사항 점검 ※ 개인별 ISP 현실성 검토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 연계 협의 등 ※ 자활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의뢰 ※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대상자 의뢰 ※ 알코올 등 중독 문제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대상자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p>외부통합사례회의 - 월 1회 이상 외부통합사례회의의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외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 실시 	<p>외부통합사례회의 - 월 1회 이상 외부통합사례회의의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및 지역 내 관련 사례관리 담당 기관 참석 요청 ※ 정신장애(알코올 등) 관련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일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참여 협조 요청 ※ 지역사회 내·외 서비스 전달체계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례 관리 실시 - 공공부문 사례관리 부문에서 사례회의의 참석 요청 시 협조 ※ 외부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사례 관리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eway 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 (자활서식 21-1호) • Gateway 운영 현황 및 결과를 작성 하여 시·군·구 보고 <p>종결과 사후관리 여부 판정(자활서식 35호) 위탁종결보고서 활용</p>	<p>평가 및 종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과 사후관리 여부 판정 (자활서식 35호)위탁종결보고서 활용 <p>※ 타 사례관리 사업으로 연계 필요할 시 위탁종결 보고서상의 종결 및 중도탈락 이유 중 '기타' 항목에 체크하고 타 사례관리 사업으로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6.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자활-정신건강 연계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정신건강사업 안내 가) 시·군·구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의료급여관리사 등과 신규 발견 및 등록 체계 활성화 	<p>〈내용 수정〉 정신건강사업 안내 가) 시·군·구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의료급여관리사 등과 신규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보건팀 등)과의 신규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p>정신건강사업 안내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제공</p>	<p>〈내용 추가〉 정신건강사업 안내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에 의뢰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p>정신건강사업 안내 마)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p>	<p>정신건강사업 안내 마)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를 서비스 의뢰·연계하는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회의)에 참석 협조 - 정신건강 문제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정신건강사업 안내</p> <p>라)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p>	<p>정신건강사업 안내</p> <p>라)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p> <p>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중, 위기, 응급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평가한다</p> <p>※ 의뢰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방문 시, 관할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p>정신건강사업 안내</p> <p>나) 중독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팀, 지역주민 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 기관과의 신규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p>	<p>정신건강사업 안내</p> <p>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보건팀, 의료급여팀, 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신규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p>정신건강사업 안내</p> <p>나) 중독질환 관리사업</p>	<p>〈내용 추가〉 정신건강사업 안내</p> <p>나) 중독질환 관리사업</p> <p>- 대상자를 서비스 의뢰·연계 하는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회의(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회의)에 참석 요청 시 협조</p> <p>- 정신건강 문제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p>정신건강사업 안내</p> <p>(3)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p> <p>•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 목표 수립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p>	<p>〈내용 추가〉 정신건강사업 안내</p> <p>-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 관리, 돌봄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팀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7.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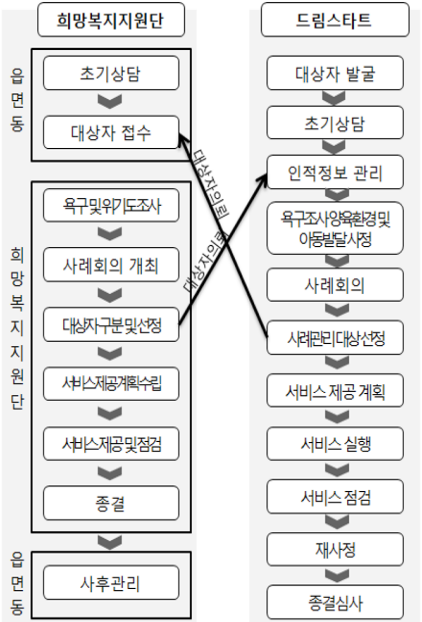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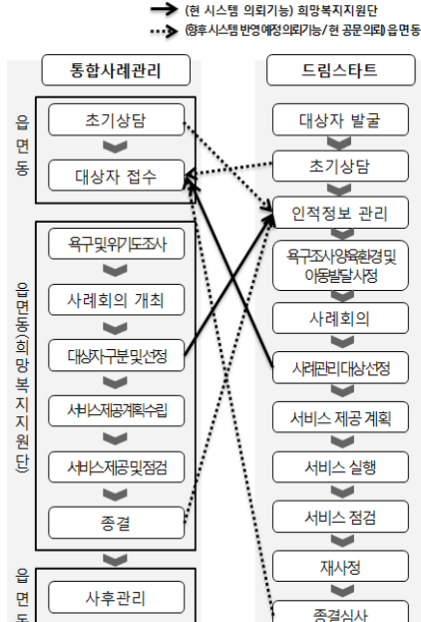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방문형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 연계, 아동통합보호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통합사례관리 절차</p> <p>2) 초기상담</p> <p>① 개념</p> <p>② 수행주체</p> <p>③ 시기</p> <p>④ 수행방안</p>	<p>타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 관리, 자활사례관리)과 공동개입을 위해 의뢰할 수 있음</p> <p>통합사례관리 절차</p> <p>2) 초기상담</p> <p>① 개념</p> <p>② 수행주체</p> <p>③ 시기</p> <p>④ 수행방안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시 고난도 사례는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 의뢰(기존 내용) • 초기상담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p>※ 의뢰기준: 대상가구의 주 아동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아동사례관리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으로 의뢰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p>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p> <p>* 대상가구의 특성상(이하생략)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독거 노인생활관리사,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등과(이하생략) 학대 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p>	<p>(추가)</p> <p>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p> <p>* 대상가구의 특성상(이하생략)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인력,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학대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알코올 중독자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읍·면·동 복지도우미 등) 등과 동행 방문</p>	<p>** 알코올 중독자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읍·면·동 복지도우미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 등과 동행 방문</p> <p>※ 단,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행 시 대상자는 정신 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하며, 주취 상태가 아닐 것</p> <p>- 중독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의뢰 시, 의뢰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방문 시 관할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p>- 타사례관리 사업(아동사례관리-드림스타트) 의뢰</p> <p>- 의뢰기준: 대상가구의 주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지원 서비스가 주된 욕구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선정 단계에서 아동사례관리(드림스타트) 대상으로 이관</p>	<p>대상자 구분 및 선정</p> <p>4. 수행방안</p> <p>타 사례관리 사업(아동사례관리-드림스타트)의뢰</p> <p>-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p> <p>- 의뢰기준: 대상가구의 주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아동사례관리(드림스타트사업)대상으로 의뢰 가능(희망복지지원단은 2014년 1월부터 시스템으로 의뢰 가능)</p> <p>- 읍·면·동 초기상담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p> <p>- 대상자 의뢰는 1회 가능하며, 동일 대상자 재의뢰는 불가능</p> <p>-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종료 시 통보</p> <p>- 사례관리 종결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2018년 기존 내용 프로세스 차트. 좌측: 희망복지지원단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및위기도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구분및선정,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서비스제공및점검, 종결, 사후관리). 우측: 드림스타트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인적정보 관리, 욕구조사양육환경및 아동발달사정, 사례회의, 사례관리대상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실행, 서비스 점검, 재사정, 종결심사). 중앙: 대상자입력. 화살표는 단계별 진행과 상호연계를 나타냄.</p>	 <p>2019년 개정 내용 프로세스 차트. 좌측: 통합사례관리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및위기도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구분및선정,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서비스제공및점검, 종결, 사후관리). 우측: 드림스타트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인적정보 관리, 욕구조사양육환경및 아동발달사정, 사례회의, 사례관리대상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실행, 서비스 점검, 재사정, 종결심사). 중앙: 대상자입력. 화살표는 단계별 진행과 상호연계를 나타냄. (현 시스템 의뢰기능) 희망복지지원단, (향후 시스템 반영 예정 의뢰기능/현 공문 의뢰) 음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p>11) 사후관리 (4) 수행방안</p>	<p>(추가) (4) 수행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방문형 서비스(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방문건강관리)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사후관리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팀은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공유 등의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방문건강관리
<p>10) 종결 - 종결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회의 실시: 종결사례 평가, 목표달성 정도 등 사례관리 개입 전체과정을 평가하여 종결 여부 결정 	<p>(추가) - 종결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회의 실시: 종결사례 평가, 목표달성 정도 등 사례관리 개입 전체과정을 평가하여 종결 여부 결정* * 종결 여부 결정시 해당 가구의 지역내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 종결회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하나,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회의필수 참석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V. 읍·면·동 민관협력과 자원개발·관리</p> <p>2. 읍·면·동 민관협력체계 운영강화</p> <p>1) 민관협력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및 지소, 고용복지+센터, 노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관, 복지시설·단체, 초·중·고등학교, 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 특히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형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p>2) 협력체계 운영방안</p>	<p>(수정)</p> <p>V. 읍·면·동 민관협력과 자원개발·관리</p> <p>2. 읍·면·동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체계 운영 강화</p> <p>1) 연계·협력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사업별 기준 참조 <p>2) 협력체계 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초기상담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관 의뢰 - 가구 공동 방문 및 모니터링: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가구 공동 방문 및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행 시 대상자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하며, 주취 상태가 아닐 것 - 연계·협력 협의체 구성: 필요시 읍·면·동 주도형 연계·협력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필요 - 방문형 서비스 연계·협력: 방문건강관리(보건소 방문보건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은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공유 등의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p>연계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8. 희망복지지원단

지침 개정

연계 방안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보건복지 연계, 아동통합보호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part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p> <p>1. 통합사례관리사업 개요</p> <p>3. 운영체계</p> <p>라. 자활관련 사업팀</p> <p>마. 통합조사관리팀</p> <p>바. 지역사회보장협의체</p> <p>사. 보건소</p> <p>아. 교육청(학교)</p> <p>자. 고용센터</p> <p>차. 시·군·구 사업팀</p> <p>카. 노인보호전문기관</p> <p>타. 아동보호전문기관</p>	<p>part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p> <p>1. 통합사례관리사업 개요</p> <p>(변경) 3. 운영체계</p> <p>라. 통합조사관리팀</p> <p>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p> <p>바. 교육청(학교)</p> <p>사. 고용센터</p> <p>아. 노인보호전문기관</p> <p>자. 아동보호전문기관</p> <p>차.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p> <p>- 고위험 독거노인(치매, 자살 위험, 학대피해 등) 관리 및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 및 협조</p> <p>카. 자활관련 사업팀</p> <p>타. 보건소</p> <p>-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방문건강관리사 또는 간호직 공무원,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중독관리지원센터(중독관리통합 지원), 자살예방센터 근무자의 참여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보건 연계 부문을 지원</p> <p>파. 시·군·구 사업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p>Ⅲ. 욕구 및 위기도 조사</p> <p>4. 수행방안</p> <p>-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p> <p>* 대상가구의 특성상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복지위원,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과 동행 방문하고 아동/노인학대 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p>	<p>Ⅲ. 욕구 및 위기도 조사</p> <p>(변경) 4. 수행방안</p> <p>-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p> <p>* 대상가구의 특성상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복지위원,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과 동행 방문하고 아동/노인학대 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p>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 알코올 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읍·면·동 복지도우미 등) 등과 동행 방문</p>	<p>** 알코올 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읍·면·동 복지도우미 등)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 동행 방문</p> <p>(추가)</p> <p>※ 정신건강전문요원 동행요건: 대상자로부터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주취 상태가 아닌 경우</p> <p>•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p> <p>※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정보연계 필요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의 제공받는 해당기관 명시 확인</p>	
<p>IV. 사례회의 개최</p> <p>1. 개념</p> <p>- 통합사례회의</p> <p>※ 참석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팀장, 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사례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복지, 법률, 정신과 분야 등)</p>	<p>(변경)</p> <p>1. 개념</p> <p>- 통합사례회의</p> <p>※ 참석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팀장, 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필요시 관련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및 사례대상가구 관련 분야 전문가(복지, 법률, 정신건강 등)</p> <p>(추가)*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등</p> <p>※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정신보건 및 건강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을 것으로 판단·예측되는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련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함</p> <p>※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 관련 내용의 사례회의 개최 시 의료급여관리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협조해야 함</p> <p>※ 타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등)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개최 시 참석에 협조해야 함</p> <p>[참고] 통합사례회의 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p>4. 수행방안</p> <p>• 사례회의 참석 범위</p> <p>-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팀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전문가의 적극 참여 권장</p>	<p>(변경) 4. 수행방안</p> <p>• 사례회의 참석 범위</p> <p>-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팀, 정신건강 및 중독사례관리 관련 담당 등), 시·군·구 사업팀(의료급여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자활사례관리 수행기관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적극 참여 권장</p> <p>• 솔루션 위원회 운영 (주요 역할) 슈퍼비전 제공, 통합사례관리 지원</p>	

구분		단위	주체	참석자 범위
통합 사례 회의	통합사례회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필수)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담당자, 해당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필요시) 해당 가구의 사례관리담당자(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및 정신 건강사례관리)
종결 회의	종결회의 종결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필수)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담당자, 해당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필요시) 해당 가구의 사례관리담당자(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및 정신 건강사례관리) ※ 종결심사 필요시 서면으로 가능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V. 대상자 구분 및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례관리사업(아동사례관리-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의뢰 • 타 사례관리사업(노인학대사례관리-지역 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 	<p>V.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례관리 사업(정신건강사례관리-정신건강 복지센터)으로 의뢰 • 타 사례관리 사업(알코올 중독-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으로 의뢰 • 타 사례관리사업(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으로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2018년 기존 내용	2019년 개정 내용	연계기관
<p>Ⅷ. 종결</p> <p>4. 수행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절차 	<p>Ⅷ. 종결</p> <p>4. 수행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여부 결정 시 해당가구의 사례관리 담당자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등) 참여 요청(종결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p>part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p> <p>Ⅰ. 지역보호체계 운영 개요</p> <p>4.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 방문형 서비스 사업 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특히, 방문형 서비스를 공공(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담당공무원)와 보건소(방문건강 간호사)간 협력 체계 구축 - 방문형 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 방문을 추진하고,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p>(변경) part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p> <p>Ⅰ. 지역보호체계 운영 개요</p> <p>4.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마련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정신건강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 드림스타트 • 자활사례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방문건강관리
<p>Ⅱ. 방문형 서비스 사업 협력 체계 운영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 체계 운영 및 대상사업 2. 협력 체계 운영 방안 3. 활동예시 	<p>(변경) Ⅱ.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체계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운영 목적 2.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개요 3.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의의 기준 및 절차 4.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나. 아동통합보호 (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다. 보건복지 연계 (의료급여-방문건강-정신건강-복지) 라. 방문형 서비스 연계 (읍·면·동-방문건강-노인돌봄기본) 마. 자활-정신건강 연계 (자활사례관리-중독-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관리통합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9. 개인정보 보호

개념

대상자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시와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함

-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및 법적 근거, 정보의 활용,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명확한 설명 실시

대상자 정보의 이용·제공 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열람범위를 제한, 권한이 없는 내·외부 관련자의 접근에 의한 정보훼손 및 유출에 대한 관리 필요

※ 사례회의 등 욕구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삭제

- 대상자의 정보는 정보의 주체와 주사례관리자만 열람하도록 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강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담당자 - 사례회의 참석자(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명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 및 제5조 제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 7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 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수행 기관 및 시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가족구성원 정보 (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 사례관리 정보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집·이용

※ 위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인 쇄 | 2019년 2월

발 행 | 2019년 2월

발 행 처 |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대표전화 1566-3232 / 팩스 02-6360-6360

<http://www.ssis.or.kr>

편집디자인 |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비매품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무단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